

#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6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. 7. 3     | 고 성 군 수       |
|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7. 5        |               |
|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4. 7. 14 | 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 |

### 2. 개정이유

-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 관리 제도에 맞게 변경하고, 특기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,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 있는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 내로 조정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- 우등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.(안 제3조)
-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 내로 변경함.(안 제8조)
- 장학금의 지급정지기준을 학습성취도로 변경함.(안 제9조)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 및 지급정지기준을 학업성적관리제도에 맞게 변경하고,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, 매학기 개시 50일 이내에 지급토록 되어있는

장학금의 지급시기를 최단시기 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입법 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(교육인적자원부훈령제616호)에 의거 우등생장학생의 자격기준을 학습 성취도로 변경하고 특기생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,
- 장학금의 지급시기를 매학기 개시 후 50일이내 지급에서 40일이내 지급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의 정지기준을 학습 성취도로 변경하는 등,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경상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위반하지 않는 등 시·도조례 우위원칙에 부합되게 관련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함은 타당할 것이라 하였음.

**5. 질의 및 답변 : 없음**

**6. 토 론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**

- 2004. 7. 1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